

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
대한민국의 흥망의 미래

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

2020. 3.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

목 차



I.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대응 및 경과	1
1. 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운영	1
2. 대응 경과	2
II.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	5
1.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	5
2.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기금	6
3.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	6
4. 수출컨소시엄사업 지원	7
5. 보건용품 스마트공장 구축 신속지원	7

참고1 : 정부 주요정책

참고2 : 중기부 산하 금융기관 추가정책

참고3 : 코로나19 추경예산 및 조특법 통과 주요내용

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대응 및 경과

① 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운영

□ 추진배경

-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‘주의’에서 ‘경계’로 상향 (1.27)
 - 「중소기업 코로나-19 비상대응반」 가동 (반장 서승원 상근부회장)
-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‘경계’에서 ‘심각’으로 상향 (2.23)
 - 「코로나-19 중소기업대책본부」 격상 (본부장 김기문 회장)

□ 주요역할

- 신속한 피해상황 수시 파악, 정책당국에 개선 방안 전달

□ 대응체계

- 조 직 도 <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본부 >



○ 주요역할

- 운영지원팀 : 조직 내 확산 방지(직원 위생관리 등), 시차출퇴근 실시, 행사차제 등
- 협동조합팀 :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, 피해사례 접수, 행사 차제 안내 등
- 중기·소상공인팀 : 실태조사(피해사례 및 정부지원책), 피해사례 접수,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의, 정책건의(추경 반영사항 등)
- 홍 보 팀 : 정책홍보, 불안심리 최소를 위한 대응 등

② 대응 경과 *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
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피해사례 접수 (29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수출 중소기업(50개사) 대상 전화인터뷰 실시 ○ 비상대응반 가동 (30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근부회장 반장으로 대응체계 구축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(3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상대응반 체계 구축 및 본회 지원방향 언급 ○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마스크 1만개 지원 (3일) ○ 중기부장관 현장 간담회 개최 (4일) ○ 경제부총리 간담회(7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부품 수급 대책마련, 정부 지원자금 조속 집행 등 건의 ○ 中企 코로나19 피해 1차 조사결과 발표 (10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의 34.4% 타격 응답 (제조업31% / 서비스업37.9%) ○ 관세청장 간담회 개최 및 건의 (11일)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대상으로 협동조합 단위의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 (12일~) ○ VIP 간담회 (13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관련 은행 일선 창구 적극행정 건의, 피해사례 공유 등 ○ 노란우산 대출금리 인하 (13일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.4% → 2.9% (0.5%p 인하) ○ 한국은행 간담회 (14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중개대출 확대, 중기대출안정화프로그램 적극 가동 및 요건 완화 건의 ○ 착한 마스크 기업, (주)에버그린 방문 격려 (18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, 박영선 장관 ○ 국무총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(20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제도 지원, 무역금융 확대 건의 ○ 코로나19비상대응반 → 비상대책본부로 격상 (25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책본부장 : 중앙회장 ○ 코로나19 피해 2차 조사결과 발표 (27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의 70% 타격 응답 (수출기업 66.7% / 수입기업 78.2%) ○ 코로나19 기자간담회 개최 및 정책제언 (27일)

구분	주요 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②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탄력적용 및 특별보증 공급 ③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④ 중국산 원자재·부품의 국산 대체 비용 지원 ⑤ 미래 육성 산업의 원자재·부품 국산화 지원 ⑥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신속·간소 행정 지원 ⑦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⑧ 해외전시회 취소·연기로 인한 기집행 비용 지원 ⑨ 국내전시회 개최 취소에 따른 관련 업계 지원 ⑩ 마스크 등 위생용품 필수 업종 지원 <p>○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 (28일~)</p>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제 납부유예 대책 마련 (1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란우산공제기금 3개월 부금 납부유예, 공제기금 대출 한도 및 상환 유예 ○ 서울시장 간담회 개최 (2일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중소기업계 「착한 임대인 운동」 추진 지원 ②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③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④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⑤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⑥ 서울시 PL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⑦ 서울시 공공기관 5천만원 미만 조합추천수의계약 지원 강화 ⑧ 「서울 마스크 제조기업」 긴급 자금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</div> ○ 중소기업중앙회 재택근무 실시 (2일~) ○ 협동조합 방역물품 지원 (4일, 18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1차>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대민접촉이 많은 조합을 중심으로 방역마스크 5만개와 손세정제 및 제균티슈 각 1만개를 긴급 전달 - <2차> 영남권 이외 조합에 면마스크 1.5만개, 손세정제 및 제균티슈 각 1만개 전달 ○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개최 (5일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② 코로나 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③ 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④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⑥ 뿌리기업 인력난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</div>

구분	주요 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용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(10일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형별 1억까지, 해당 업종 우선 선정 등 ○ 코로나피해 3차 실태조사 (10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구 100개 업체 대상 ○ 코로나 피해 수출입 기업 실태조사 (11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312개 업체 대상 ○ 코로나19 추경의 조속 통과 바라는 중소기업계 호소문 발표 (12일) ○ 중기부장관 간담회 개최 (16일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구경북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단 대책 마련 ②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성 강화 ③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등 ④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⑤ 국제분쟁 발생 시 대응비용 지원 ⑥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⑦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확대 ⑨ 산업현장 제조활동을 위한 마스크 수급 지원 </div> ○ VIP 간담회 (18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대출분 전액 1년 만기연장, 보증한도 별도 추가 특례보증,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, 기업인 주요수출국 예외입국 허용 등 건의 ⇒ 기은/산은/수은 만기도래 대출금 만기연장 예정 및 시중은행 계도(금융위) ⇒ 기업인 주요 수출국 예외입국 확대 추진(산자부) *홍콩, 베트남, 우즈베크은 입국허용 ※ VIP, 중기 의견 반영해 추가 정책 마련 예정

II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

① 중소기업계 「착한 임대인 운동」

□ 주요내용

- (추진방향) “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”, 중소기업계 「착한 임대인 운동」
- (추진방식) 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조합을 통해 회원사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요청,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
- (추진내용) 임대료 자발적 인하 독려 및 모범사례 발굴

임대료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대상) 소상공인 대상 임대인 ○(내용) 향후 3개월간 임대료 최대 50% 인하 캠페인 전개
모범사례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대상) 지역본부 및 중단협, 각 시장·상점가 조합 ○(내용) “착한 임대인 찾기”, 감사패 전달 등 사례 확산

- (추진기간) '20. 3. 2 ~ 6. 30 * 코로나 19 관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참여대상

- 중소기업 단체 및 조합
 - 16개 중단협, 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, 지역 중소기업회장, 회원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등 645개 협동조합 및 단체
- 노란우산공제 가입자(임대사업자) *985명 참여의향(13(금) 기준)
 -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125만명 중 부동산임대업자 약 12만명

※ 중소기업중앙회,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현황

1. 중앙회관 임대료 인하

- 총 23개 영업장 중 여의도 2개 업체 제외한 21개 업체에 대해 면적기준 10%~30%인하
 - * 여의도 : 9개 / DMC : 11개 / 개발원 : 1개
 - 제외업체 : 아피제(대기업군), 더파티움(예식장 신규업체)
 - 면적기준 : 30평이하(30%), 150평이하(20%), 150평 이상(10%)
- 적용시기 : 3월 1일부터(2개월간)

2. 대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

- 판매장 임대료 50% 인하(2.28~ 별도결정시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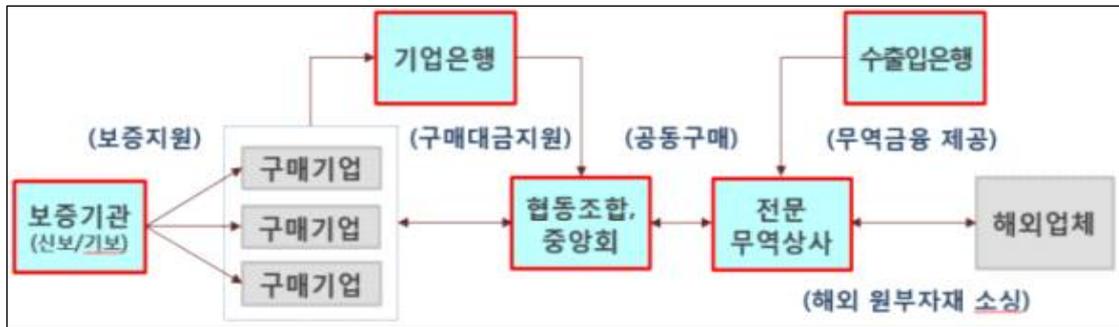
②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기금

-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0.5%p 인하 (3.4% → 2.9%)
 - 대 상 : 노란우산 대출이용자 약 15만명 및 신규 대출자
- 노란우산 부금납부 3개월 유예
 - 대 상 : 노란우산 가입자 약 125만명(신청자에 한함)
- 노란우산 대출 확대
 - 부금내 대출 확대 *(19년) 14,300억원/15만명 → ('20년) 20,000억원/20만명
- 공제기금 부금납부 3개월 유예
 - 대 상 : 공제기금 가입업체 약 17천개사(신청기업에 한함)
- 공제기금 대출상환 1년 연장
 - 대 상 : 공제기금 대출업체 약 4,100개사(신청기업에 한함)

③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

- 개 요
 - 「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제도」는 전문무역상사((주)아이마켓코리아 등)가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 원부자재의 단가를 낮춰 공급하는 제도
 -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이 협업하여 보증서 발급 및 자금대출을 통한 구매대금도 지원

□ 추진체계 및 절차



〈참가신청〉	〈구매약정〉	〈보증추천〉	〈보증발급〉	〈약정체결〉	〈공동구매〉
참여기업	참여기업 → 무역상사	중앙회	보증기관	참여기업	참여기업
참여신청서 제출	공동구매 (수입) 확정 *발주계약 체결	보증기관 추천 (신보, 기보)	보증심사 및 발급	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약정	KBIZ공동구매플랫폼* 내 거래

* KBIZ공동구매플랫폼(<http://coopbuy.kbiz.or.kr>)

④ 수출권소사업 지원

□ 전시회 연기(취소)에 따른 지원

- 사전준비단계 旣 집행비용 지원
 - 사전시장조사비, 홍보물제작비, 물류비 등
- 내년도 동일 전시회 신청시, 우선 선정 및 지원

□ 추후 불용예산 규모에 따라 하반기 지원 대상 추가모집·선정

⑤ 보건용품 스마트공장 구축 신속지원

□ 마스크 등 제조기업 우선 선정·구축 지원

- 구축유형별 최대 1억원 지원, 전문가 멘토링·기술지도 병행

참고1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정책

① 금융 지원 정책

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]

□ 긴급경영안정자금

- 신규 공급

지원금액	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→ 6,250억원
지원대상	코로나19 피해(병·의원,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)로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
용자조건	(대출기간)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) (대출한도)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('20.1분기 2.1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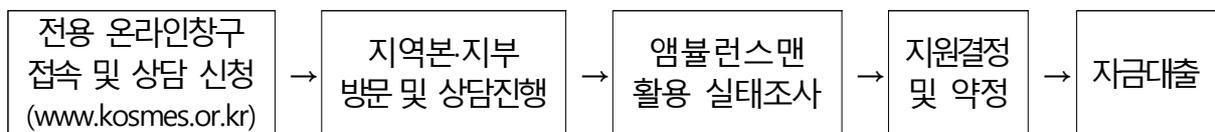
-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

만기연장	○ 최소 상환요건(원금 25% 이상) 미적용 ○ 가산금리 감면(0.5%p)
상환유예	○ 최소 상환요건(원금 10% 이상) 미적용 ○ 유예기간 연장(6개월 → 9개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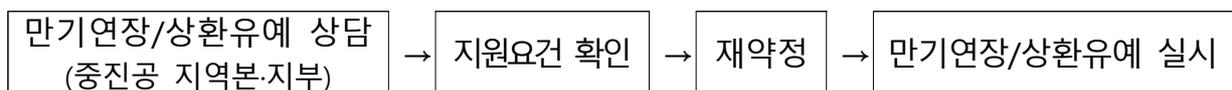
*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,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

□ 신청 절차

- 신규 공급



-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



□ 문의처

-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(홈페이지 참조)

[기술보증기금]

□ 기업보증 및 만기연장

- 신규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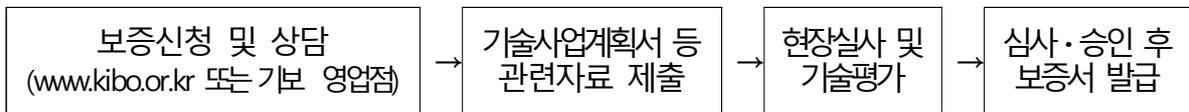
지원금액	1,050억원
지원대상	아래 "대상기업 세부기준"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관광식당업, 시내순환관광업, 유원시설업, 국제회의업 ○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○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○ 「공연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○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 ○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·입 실적이 있는 기업
보증조건	(보증한도)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(보증비율) 95% 부분보증 / (보증료율) 1.0% 고정보증료 (심사기준 완화)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

- 만기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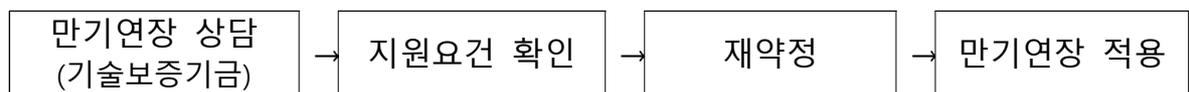
지원대상	신규 공급과 동일
만기연장	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* 다만,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

□ 신청 절차

- 신규 공급



- 만기 연장



□ 문의처

-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-1120 또는 각 영업점(홈페이지 참조)

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

□ 경영애로자금

- 신규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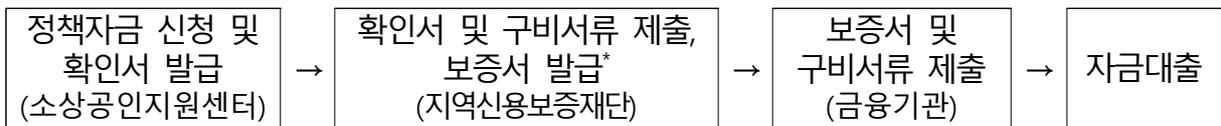
지원금액	경영애로자금 200억원 → 1조 4,200억원
지원대상	① 음식, 숙박, 도소매, 운송, 여가·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,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
용자조건	(대출기간)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) (대출한도)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(대출금리) 1.5% 고정금리 적용

- 만기연장

지원대상	신규 공급과 동일
만기연장	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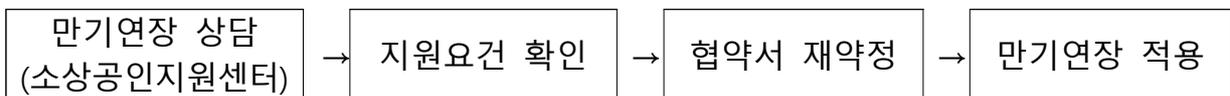
□ 신청 절차

- 신규 공급



*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보증서 없이 직접 금융기관 이용 가능

- 만기 연장



□ 문의처

-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(홈페이지 참조)

[신용보증재단중앙회]

□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만기연장

○ 신규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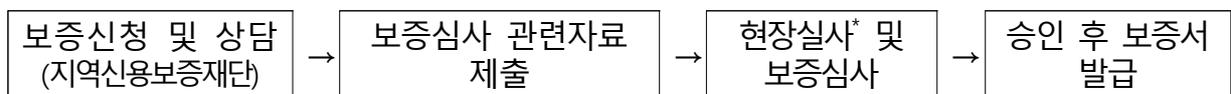
지원금액	1,000억원 → 1조원
지원대상	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*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·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* 음식·숙박·도소매업, 운송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
보증조건	(보증한도)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(보증비율) 100% 전액보증 / (보증료율) 0.8% 이내 (보증기간) 5년 이내

○ 만기연장

지원대상	신규 공급과 동일 (2020.2.13.~6.30.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)
만기연장	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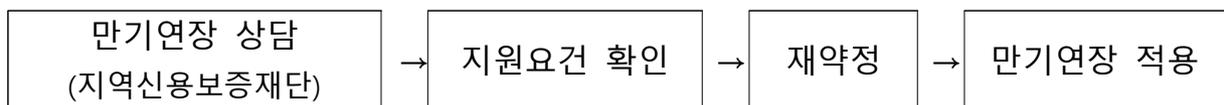
□ 신청 절차

○ 신규 공급



*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사 생략 가능

○ 만기 연장



□ 문의처

-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-7365

② 인력 운용 지원

[고용센터]

□ 감원없이 휴업·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[고용유지지원금]

-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, 근로자 평균임금의 70%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(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)
- 정부는 유급휴업·휴직시 기업에게, 무급휴업·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
 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(급여의 70%)을 지급하면,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/4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
 -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(=6만6천원×30일)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,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
- 신청 및 문의 :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workplus.go.kr 접속 후 확인)

구분	대상	경우	지원명	지원내용	
코로나19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발생시 (고용부)	기업	유급 휴업·휴직시	고용유지 지원금 (휴업급여 등)	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3/4 그 외 기업 2/3
				한도	1일 6.6만원 (월 198만원)
	근로자	무급 휴업·휴직시	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	한도	1일 6.6만원
				요건	①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

[사례1] A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이 월 3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

⇒ 휴업수당이 210만원¹⁾ 발생하며

그 중 정부가 157.5만원²⁾ 지원해 기업은 52.5만원 부담

1) 휴업수당 210만원 = 월임금의 70% (300만원 × 70%)

2) 정부 지원액 157.5만원 : 휴업수당 총액(210만원)의 3/4인 157.5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52,500원이므로 1일 지원 상한액(6만6천원)을 초과하지 않아 3/4 전액인 157.5만원 지원

[사례2] B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 X)이 월 5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

⇒ 휴업수당이 350만원¹⁾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98만원²⁾ 지원해 기업은 152만원 부담

1) 휴업수당 350만원 = 월임금의 70% (500만원 × 70%)

2) 정부 지원액 198만원 : 휴업수당 총액(350만원)의 2/3인 233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7만8천원으로 1일 지원 상한액(6만6천원)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액 월 198만원(=6만6천원×30일)만 지원

□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

- 개요 :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*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
* 유연근무제 :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
- 지원요건 : **유연근무제 활용 제도(취업규칙, 인사규정 등)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*한 기업**
* 출퇴근관리 : 전자.기계적 방식 (재택근무는 이메일, 모바일메신저 허용)
- 지원내용 :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
*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(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)

기준	1주당 지급액		연간 총액	
	주 3회 이상	주 1~2회	주 3회 이상	주 1~2회
지원금액	10만원	5만원	520만원	260만원

- 신청 및 문의 :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workplus.go.kr 접속 후 확인)

□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

- 개요 :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
- 지원요건 :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
- 지원내용 :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(근로자당 최대 5일, 한부모 10일)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
- 신청 및 문의 : 가까운 고용센터(workplus.go.kr 접속 후 확인)

[근로복지공단]

□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 확대

- 지원대상 :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지원요건 : (이전) 월평균소득 3인 가구 '20년 기준 259만원 이하(중위소득의 2/3)
→ (개선) 월평균소득 3인 가구 '20년 기준 388만원 이하(중위소득)
- 신청 및 문의 :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대표1588-0075)

[국민연금공단]

□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

-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 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
- 신청 및 문의 :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(대표 1335)

③ 기타 지원 대책

□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

- 민간 ‘착한 임대인’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,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
 - * 임차인 요건 : ①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, ②도박·사행행위업, 유흥·향락업 등 제외
 -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(1~6월) 인하액의 50%를 임대인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('20년 한시)
 -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,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(20개 시장)
-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
 -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
 - 지원규모
 - ▶ 중앙정부 :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→1% 인하(2천만원 限)
 - ▶ 국가 위탁개발 재산 : 임대료 50% 감면(2천만원 限)
 - ▶ 지자체 :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→최저1% 인하
- 공공기관(103개* 기관 참여) 소유재산의 소상공인(중소기업 포함) 임차인에 임대료 인하
 - *철도역 구내매장(코레일),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(LH), 공항내 편의매점(인천공항, 한국공항), 고속도로 휴게소(도공) 항만(부산항만공사/여수광양항만공사)등 임대시설
 -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 - 지원규모
 - ▶ 6개월간 임대료 20 ~ 35% 인하(임차인과 협의)
 - ▶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신규 공급

□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

-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*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'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**으로 경감
 - *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(제조업, 도매업 등)도 포함(단, 부동산임대업,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)
 - ** 간이과세 방식 : [매출액 × 업종별 부가율(5~30%) × 10%]

참고2 코로나19 관련 중기부 산하 금융기관 추가 대책

<지역신용보증재단>

□ 위탁보증제도 확대

- 지역신보 방문 없이,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이 가능한 체계로 확대 개편
- 위탁업무 대폭 확대로, 은행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하여 신속한 보증공급 유도
-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 확대* 및 참여 시중 지방은행도 확대**
 - * 12개 → 16개 전 지역재단
 - ** 참여은행은 지역재단별 차이 존재

□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

-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(전체의 66.5%)는 최소요건*만 심사하고,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 심사팀 별도 신설 추진
- 현재 6개 재단에서 기 도입(3개 재단 준비 중) → 전 재단 확대 유도
- *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 요건은 국세청 휴폐업사실 조회로 같음하고, 보증심사 기준일 현재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만 없으면 기보증과 무관하게 보증
- 심사기준·점검서류 요건 완화 등 심사 간소화 사항 현장적용 지도 강화

- (연체제한 완화) 현재 연체사실만 없으면 과거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
- (중첩보증 완화) 지역신보별 중첩보증 제한기간(3개월 ~ 1년)을 2개월로 완화
- (서류간소화) 소액심사(특례보증 지원금액이 3천만 원 이하)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침해 심사 생략 가능

<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>

□ 직접대출 비중 확대(25%→30%)

-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중인 직접대출 비중 확대로 신속한 자금집행 추진(5일 이내 대출 가능)
- ※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신속 실행 가능, 매출액 감소 증빙 불필요

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확대

-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

참고3 코로나19 추경예산 및 조특법 통과 주요내용

□ **코로나 추경 : 11.7조** (①방역, ②중소기업·소상공인, ③민생·고용안정, ④지역경제·상권)

추가경정예산안		정부(안)	통과(안)	증 감	내 용
		11.7조	11.7조	-	통과된 추경안 총액은 정부안과 동일 (취업성공패키지,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등 감액)
1	감염병 방역체계 구축	2.3조	2.1조	-0.2조	마스크 생산·보급, 치료제 개발, 파견의료 인력 등 추가지원(0.15조) 등
	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	0.08조	0.2조	+0.12조	
	의료기관 손실보상 등	1.7조	1.4조	-0.3조	
	격리치료자 생활지원 등	0.5조	0.5조	-	
2	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	2.4조	4.1조	+1.4조	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(1.1조), 특례보증확대(0.04조), 항공·해운·운수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(0.24조) 등
	경영자금 지원	1.7조	3.1조	+1.4조	
	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	0.61조	0.58조	-0.3조	
	파해점포·전통시장 지원	0.1조	0.4조	+0.3조	
3	민생·고용안정	3.0조	3.5조	+0.45조	저소득층 소비쿠폰(0.17조), 긴급복지예산(0.2조), 건강보험료 경감(0.2조), 고용안정프로그램(0.1조), 돌봄지원(0.03조) 등
	민생안정·소비여력 제고	2.4조	2.9조	+0.5조	
	고용시장 피해 최소화	0.6조	0.55조	-0.05조	
4	지역경제·상권	0.8조	1.2조	+0.4조	특별재난지역복구, 지역상권 활성화 등 증액
5	세입경정	3.2조	0.8조	-2.4조	추가 세금납부 부담경감
별도	대구·경북 특별지원	0.6조	1.7조	+1.1조	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산 10조 증액 긴급복지·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우선 배정

* 출처 :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보도자료(기획재정부, 20.3.17)

□ 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」

순번	내 용	대 상
1	간이과세 적용 확대 (평균 30~120만원 경감)	- 대상 확대 : 연매출 4,800→8,800만원 - 2020년까지 1년간 지원
2	중소기업 소득세·법인세 30~60% 감면	- 소기업 60%, 중기업 30% - 2020년까지 1년간 지원 - 재난지역 중소기업 대상
3	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상향	- 연매출 3,000→4,800만원
4	착한임대인 1~6월 임대료 인하 50% 보전	- 소득세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 *조특법 제96조의3 신설
5	체크·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	- 15~40%→30~80%(2배확대)
6	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% 인하	- 3~6월 구매자 대상

* 출처 :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국회 기획재정위원장, 20.3.17)